

지정번호 제 호

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

1. 기관명:

2. 소재지:

3. 대표자 성명:

4. 지정 분야:

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3조제2항,
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
_____분야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
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산업통상부장관 직인